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03년 12월 8일

3. 제안이유

- 지방분권·행정혁신·균형발전·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도정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 등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 도에 ‘혁신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및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지방분권·행정혁신·균형발전·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과 도정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과 위원회 구성 원칙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 혁신발전협의회 설치·기능·구성·회의 운영방법을 정함(제3조 내지 제6조)

-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및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회의 운영방법을 정함(제7조 내지 제18조)
- 위원회별 위원수는 지역혁신협의회 60인 이내,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및 삶의질향상위원회는 각 30인 이내로 정함(제9조, 제13조 및 제17조)
- 위원회의 업무협조 및 지원을 위한 도정책신발전추진단 운영,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신행정수도의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혁신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 및 행정혁신위원회,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의 근거법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인 상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와,

지역혁신협의회를 제외한 혁신발전협의회와, 지방분권·행정 혁신위원회, 삶의질향상위원회의 법적인 근거와 필요성,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가 61개가 있고,

이중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3회 이내 개최한 위원회가 78%에 달하고 있어 운영실적이 미약한 현실에서,

도정 종합적 심의기능을 수행할 본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 운영코자 한다면,

본 조례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에서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재정비하는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되는 조례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새로 창립되는 4개 위원회 13개 분과위원회의 구체적 기능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제정안 제19조 제1항에서 충청북도정혁신발전추진단을 둔다고 하였으나, 추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제19조 제3항의 충청북도정혁신발전추진단에서 소관분야별 도정혁신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하였는데,